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63

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정성호·민병덕·조계원

이기헌 · 임광현 · 정준호

김현정 • 한정애 • 김정호

이연희 · 최기상 · 박희승

임미애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2024년 방위사업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K-방산을 안보기 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'세계 4대 방산 강 국'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, 글로벌 방산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제도, 기술이전, 기술료 면제 등 자국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 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미흡한 상황임.

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선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, 기술 보유국의 수출통제제도 회피를 위한 핵심 소재·기술 내재화 및 경제 안보 강화,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 소,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력 강화, 지속적인 방위산업 수출 확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 이 필요함.

한편,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폭발적 고도화 등 관련 기술이 빠르

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, 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,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, 인공지능 원천기술 경쟁력 및 서비스 접목을 통한 상용화 등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이 국력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됨.

이에 방위산업 및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, 국가전략기술의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 항). 법률 제 호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바이오의약품"을 "바이오의약품, 방위산업, 인공지능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·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(연구 ·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) ① -----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(이하 "연구·인력개발비"라 한 다)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-----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・ 31일-----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.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연구·인력개발비 중 반도 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 이, 수소, 미래형 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 의약품, 방위산업, 인공지능--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

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(이하 "국가전략기술"이라 한다)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(이하 이 조에서 "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"라 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계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

가.·나. (생략) 3. (생략) ② ~⑥ (생략)

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